

2020회계연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광명시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서

광명시장 귀하

2021년 4월 30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광명시의회로부터 광명시 2020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광명시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광명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광명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이 형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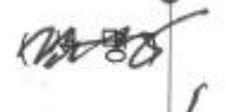
검사위원

곽 수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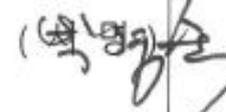
검사위원

강 문 섭



검사위원

박 경 숙



검사위원

김 지 은



목 차

I. 결산검사경과	-----	2
II. 결산검사 현황	-----	3
1. 광명시 재정의 현황	-----	3
2.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	-----	4
3. 일반회계결산	-----	6
4. 특별회계결산	-----	9
5. 기금 결산	-----	11
6. 재무제표의 결산	-----	12
7. 성과보고서	-----	14
8.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5
III.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	-----	17

I. 결산검사경과

- 2021. 3. 4. 광명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 2021. 4. 1. 결산검사 위원 위촉(시의원1, 회계사1, 세무사3)
- 2021. 4. 1. 시의회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결산검사 개시
 - 총 괄 : 이형덕 시의원
 - 위원별 세부업무

구 분	위원명	담 당 업 무
시의원	이형덕	총 괄(성과보고서)
세무사	곽수만	기획조정실, 경제문화국, 보건소, 광명도시공사, 광명문화재단등 출연기관, 성과보고서
세무사	박경숙	도시재생국, 환경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특별회계, 기금, 성과보고서
세무사	김지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국, 평생학습사업소,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 성과보고서
회계사	강문섭	행정재정국, 안전건설교통국, 복식부기, 성과보고서

-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 2021. 4. 20. 결산검사종료
- 2021. 4. 30. 감사의견서 제출

II. 결산검사 현황

1. 광명시 재정의 현황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회계	세입	678,281,367	747,172,476	792,221,870	859,743,048	1,033,965,074
	세출	535,000,592	592,749,318	622,256,996	677,947,225	855,607,040
	결산상 잉여금	143,280,776	154,423,158	169,964,874	181,795,823	178,358,034
특별회계	세입	166,716,796	165,936,882	187,786,979	226,185,352	248,498,836
	세출	92,303,433	83,958,588	90,860,226	111,570,104	117,142,855
	결산상 잉여금	74,413,364	81,978,293	96,926,753	114,615,248	131,355,981
총 계	세입(수입)	844,998,164	913,109,358	980,008,849	1,085,928,400	1,282,463,910
	세출(지출)	627,304,024	676,707,907	713,117,222	789,517,329	972,749,895
	결산상 잉여금	217,694,139	236,401,451	266,891,627	296,411,071	309,714,015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천원, %)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20년	3,739,675,876	31,311,856	3,708,364,021	902,898,668	862,814,998	△40,083,670	
2019년	3,673,737,009	28,424,866	3,645,312,143	745,981,483	678,702,192	△67,279,291	
증감	65,938,867	2,886,990	63,051,878	156,917,185	184,112,806	27,195,621	

광명시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6,000,000	6,000,000	0	0	0	
공채 b						
차입금 c	6,000,000	6,000,000	0	0	0	
채무부담행위 d						
지방공기업 채무 e						
채무총합계 f(a+e)	6,000,000	6,000,000	0	0	0	

2.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가. 총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㉔	세입결산액㉕ (㉔/㉔)	세출결산액㉖ (㉔/㉔)	결산상잉여금 (㉕-㉖)
2020년도	1,264,101,158	1,282,463,910 (101%)	972,749,895 (77%)	309,714,015
2019년도	1,074,234,786	1,085,928,400 (101%)	789,517,329 (73%)	296,411,071
전년대비 (증감)	189,866,372	196,535,510	183,232,566	13,302,944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 년 도 이월액㉡	예산현액 ㉢=㉠+㉡	결산액 ㉣	차 액 ㉣-㉢	비 율 ㉣/㉢
세 입	929,391,118	76,036,628	1,005,427,746	1,033,965,074	28,537,328	103%
세 출	929,391,118	76,036,628	1,005,427,746	855,607,040	△149,820,706	85%
잔 액				178,358,034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전 년 도 이월액㉡	예산현액 ㉢=㉠+㉡	결산액 ㉣	차 액 ㉣-㉢	비 율 ㉣/㉢
세 입	241,342,130	17,331,281	258,673,411	248,498,836	△10,174,575	96%
세 출	241,342,130	17,331,281	258,673,411	117,142,855	△141,530,556	45%
잔 액				131,355,981		

3. 일반회계 결산

가. 세입결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손 및 이월액 포함)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정 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불 납 결손액	비고
			수 납 총 액 ㉠	환급액 ㉡	실 제 수납액 ㉠-㉡			
합 계	1,005,427,746	1,069,558,714	1,048,393,011	14,427,937	1,033,965,074	33,609,050	1,984,590	
지방세수입	189,794,000	234,050,497	222,760,562	9,190,966	213,569,596	18,965,991	1,514,910	
세 외 수 입	50,470,524	69,772,247	55,677,064	1,017,556	54,659,508	14,643,059	469,680	
경 상 적 세외수입	23,574,819	25,162,961	25,105,278	223,599	24,881,679	281,282	0	
임 시 적 세외수입	26,895,705	44,609,286	30,571,786	793,957	29,777,829	14,361,777	469,680	
지방교부세	96,728,087	95,887,298	95,887,298	0	95,887,298	0	0	
조정교부금등	89,534,000	92,014,523	96,214,523	4,200,000	92,014,523	0	0	
보 조 금	396,045,064	396,038,326	396,057,741	19,415	396,038,326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82,856,071	181,795,823	181,795,823	0	181,795,823	0	0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비 고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기타	
일반회계	1,984,590	496,167		1,384,316	104,107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합 계	33,609,050	4,561,777	2,903,125	17,760,871	5,215,635	5,859	1,689	932,349	76,754	900,316	1,250,675
지방세	18,965,991	3,416,418	956,385	8,673,241	4,829,955	5,859	1,689	13,876	76,754	880,146	111,667
세 외 수 입	14,643,059	1,145,359	1,946,740	9,087,629	385,681			918,473	0	20,170	1,139,008

나. 세출결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예산현액대 비율(%)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929,391,118	1,005,427,746	855,607,040	53,109,197	84,724,296	85.1%	5.3%	8.4%
일반공공행정	57,846,931	63,364,577	48,864,278	5,361,976	9,073,097	77.1%	8.5%	14.3%
공공질서및안전	46,621,246	48,932,467	44,224,263	1,840,432	1,664,466	90.4%	3.8%	3.4%
교육	32,743,591	42,671,113	37,788,504	2,287,960	2,323,383	88.6%	5.4%	5.4%
문화및관광	35,926,757	73,996,151	45,798,820	19,482,680	8,403,291	61.9%	26.3%	11.4%
환경	67,317,192	68,136,585	56,756,191	5,331,050	5,080,533	83.3%	7.8%	7.5%
사회복지	431,967,029	439,712,662	421,311,741	4,037,072	6,005,240	95.8%	0.9%	1.4%
보건	19,182,728	19,401,794	17,978,343	286,153	769,713	92.7%	1.5%	4.0%
농림해양수산	1,875,728	1,875,728	1,603,423	35,000	165,322	85.5%	1.9%	8.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8,053,416	19,641,715	14,301,171	1,137,307	3,984,607	72.8%	5.8%	20.3%
교통및물류	35,010,378	37,638,232	31,853,543	3,420,790	2,363,898	84.6%	9.1%	6.3%
국토및지역개발	41,751,670	49,299,337	36,832,155	9,888,777	2,513,579	74.7%	20.1%	5.1%
예비비	34,956,742	34,619,676	0	0	34,619,676	0.0%	0.0%	100.0%
기타	106,137,710	106,137,710	98,294,608	0	7,757,490	92.6%	0.0%	7.3%

4. 특별회계 결산

가. 세입결산

2020년도 특별회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재원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비고
			수납 총액 ㉠	환급액 ㉡	실제 수납액 ㉠-㉡			
합계	258,673,411	259,199,267	248,826,048	327,212	248,498,836	9,904,067	796,365	
상수도사업	73,066,933	66,554,352	66,317,897	20,924	66,296,972	256,462	918	
하수도사업	31,645,288	31,115,150	30,980,322	53,482	30,926,841	188,309	0	
의료급여기금	2,773,101	2,794,159	2,780,532	0	2,780,532	13,627	0	
도시개발	6,612,442	6,614,261	6,614,261	0	6,614,261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696	691	691	0	691	0	0	
기반시설	881,817	879,709	879,709	0	879,709	0	0	
도시교통	55,160,506	66,698,126	56,709,816	252,806	56,457,010	9,445,669	795,447	
도시재정비촉진	19,233,182	19,296,006	19,296,006	0	19,296,006	0	0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19,835,833	15,950,377	15,950,377	0	15,950,377	0	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20,973,725	20,933,343	20,933,343	0	20,933,343	0	0	
도시재생	7,443,730	7,358,094	7,358,094	0	7,358,094	0	0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1,046,159	21,005,000	21,005,000	0	21,005,000	0	0	

나. 세출결산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	집행비율 ㉡/㉠	비 고
특별회계	241,342,130	258,673,411	117,142,855	31,512,317	436,955	109,581,284	45.3%	

특별회계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잔액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109,581,284	1,387,062	0	1,433,859	33,250	48,575,354	58,151,759
상수도사업	26,830,619	0	0	0	0	0	26,830,619
하수도사업	10,932,563	0	0	0	0	10,358,696	573,867
의료급여기금	31,416	116	0	0	0	0	31,300
도 시 개 발	665,365	0	0	0	0	49,468	615,897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차보상	696	0	0	0	0	0	696
기 반 시 설	593,817	0	0	0	0	0	593,817
도 시 교 통	7,692,633	1,169,752	0	1,428,859	33,250	3,923,029	1,137,743
도시재정비촉진	6,882,329	0	0	0	0	0	6,882,329
밤일지구도시개발사업	19,783,477	0	0	0	0	19,742,002	41,47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20,947,695	0	0	0	0	0	20,947,695
도 시 재 생	316,663	217,194	0	5,000	0	0	94,469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14,904,012	0	0	0	0	14,502,159	401,853

5. 기금 결산

2020회계연도 기금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금 종류별 내역

(단위 : 천원)

종류별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㉑ + ㉒)
			계 ㉒=㉑-㉓	조성액㉔	사용액㉕	
	계	40,699,509	△10,747,249	4,690,816	15,438,064	29,952,261
	남북교류협력기금	1,002,875	13,018	111,718	98,700	1,015,893
	중소기업육성기금	7,005,108	△96,827	87,287	184,114	6,908,281
	체육진흥기금	4,277,464	△401,614	130,986	532,600	3,875,850
	노인복지기금	1,743,787	2,931	27,931	25,000	1,746,718
	자활기금	1,784,258	14,642	78,412	63,770	1,798,900
	성평등기금	1,752,584	7,656	32,749	25,093	1,760,240
	식품진흥기금	807,568	△38,586	155,560	194,146	768,982
	재난관리기금	17,779,052	△11,457,043	2,255,528	13,712,572	6,322,008
	옥외광고발전기금	378,923	179,069	179,069	0	557,992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4,069,686	1,086,930	1,179,030	92,100	5,156,615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	98,207	△57,425	452,545	509,970	40,782

검사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1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29,952,261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본년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15,438,064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다.

6. 재무제표의 결산

2020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재정상태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19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유동자산	383,623	377,006	6,617	1.8%
II. 투자자산	33,843	44,143	-10,300	-23.3%
III. 일반유형자산	330,873	330,973	-100	0.0%
IV. 주민편의시설	879,112	824,833	54,279	6.6%
V. 사회기반시설	2,060,434	2,044,613	15,821	0.8%
VI. 기타비유동자산	51,791	52,169	-378	-0.7%
자산총계	3,739,676	3,673,737	65,939	1.8%
I. 유동부채	22,408	19,202	3,206	16.7%
II. 장기차입부채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8,904	9,223	-319	-3.5%
부채총계	31,312	28,425	2,887	10.2%
I. 고정순자산	3,131,637	3,108,122	23,515	0.8%
II. 특정순자산	30,754	43,936	-13,182	-30.0%
III. 일반순자산	545,973	493,254	52,719	10.7%
순자산총계	3,708,364	3,645,312	63,052	1.7%
부채및순자산총계	3,739,676	3,673,737	65,939	1.8%

본 회계연도 말 광명시의 자산은 3,739,67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5,939백만원(1.8%) 증가하였다. 유동자산은 전년대비 6,617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투자자산은 전년대비 10,300백만원 감소하였다. 일반유형자산은 전년대비 큰 변동은 없으며, 주민편의시설은 전년대비 54,279백만원 증가하였고, 사회기반시설은 전년대비 15,821백만원 증가하였다.

본 회계연도 말 광명시의 부채는 31,31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87백만원(10.2%) 증가하였다. 유동부채는 전년대비 3,20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는 전년대비 319백만원 감소하였다.

본 회계연도 말 광명시의 순자산은 3,708,36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3,052백만원(1.7%) 증가하였다. 특정순자산은 전년대비 13,18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고정순자산은 전년대비 23,515백만원 증가하였고, 일반순자산은 전년대비 52,719백만원 증가하였다.

나. 재정운영

본 회계연도 말 광명시의 재정운영 및 전년 대비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19	전년대비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316,621	291,367	25,254	8.7%
II. 관리운영비	106,371	102,416	3,955	3.9%
III. 비배분비용	16,659	17,253	-594	-3.4%
IV. 비배분수익	35,648	54,136	-18,488	-34.2%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04,003	356,900	47,103	13.2%
VI. 일반수익	444,087	424,179	19,908	4.7%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0,084	-67,279	27,195	-40.4%

본 회계연도 광명시의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총수익-총비용)은 40,08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195백만원(40.4%) 감소하였다. 총비용은 862,815백만원(사업총원가 739,785백만원, 관리운영비 106,371백만원, 비배분비용 16,65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4,113백만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902,899백만원(사업수익 423,164백만원, 비배분수익 35,648백만원, 일반수익 444,0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6,918백만원 증가하였다.

본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총원가 739,785백만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23,164백만원을 차감한 316,621백만원으로, 순원가가 많은 상위 분야는 사회복지(110,579백만원), 일반공공행정(41,309백만원) 등이다.

본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01,42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06,371백만원이며,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16,659백만원이고,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3,471백만원과 기타수익 12,17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회계연도 중에 인식한 일반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32,877백만원, 정부간이전수익 192,102백만원, 기타수익 19,10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순자산변동

본 회계연도 광명시의 순자산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19	전년대비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645,312	3,569,748	75,564	2.1%
II 재정운영결과	-40,084	-67,279	27,195	-40.4%
III 순자산의증가	28,946	10,857	18,089	166.6%
IV 순자산의감소	5,978	2,572	3,406	132.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3,708,364	3,645,312	63,052	1.7%

본 회계연도 광명시의 기말순자산은 3,708,36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3,052백만원(1.7%) 증가하였는데, 이는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 증가 및 기타순자산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다.

7. 성과보고서

광명시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광명시는 본 회계연도의 ‘사람중심 행복도시 광명’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2개)-정책사업목표(83개)-성과지표(18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8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8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그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p)

구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B/A)
계	12	83	182	122	60	67.0
홍보담당관	1	1	3	3	0	100
감사담당관	1	1	2	2	0	100
기획조정실	1	6	10	8	2	80.0
행정재정국	1	8	19	14	5	73.7
경제문화국	1	15	35	12	23	34.3
사회복지국	1	10	25	17	8	68.0
안전건설교통국	1	8	17	13	4	76.5
도시재생국	1	8	17	13	4	76.5
의회사무국	1	1	3	3	0	100
보건소	1	4	6	3	3	50.0
평생교육사업소	1	13	30	24	6	80.0
환경수도사업소	1	8	15	10	5	66.7
동주민센터	0	0	0	0	0	0

8.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가. 채권결산

채권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㉑ + ㉒)
		계㉒	발생액	소멸액	
합 계	8,527,082	△2,476,151	1,496,024	3,972,175	6,050,931
일반회계	8,024,853	△2,537,571	1,388,263	3,925,835	5,487,282
특별회계	250	0	0	0	250
기 금	501,978	61,421	107,761	46,340	563,399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050,931천원으로 확인되었다.

나. 채무결산 : 해당없음

※ 2017년부터 우리시 채무 없음

다. 물품결산

물품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물 품	1,939	11,910,071	213	1,918,299	48	185,114	2,104	13,643,256

라. 공유재산결산

공유재산 종류별 내역

(단위 : 천원)

종류별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㉑	당해연도 증감액㉒			당해연도말 현재액 (㉑ + ㉒)
			계	증 가	감 소	
합 계		2,573,429,378	72,846,148	89,633,379	16,787,231	2,646,275,526
행정 재산	계	2,562,926,768	72,929,316	86,949,970	14,020,654	2,635,856,084
	공용재산	417,919,344	6,962,409	8,698,032	1,735,623	424,881,753
	공공용 재산	2,120,641,435	65,747,281	78,000,156	12,252,875	2,186,388,716
	기업용재산	16,303,136	219,627	251,782	32,156	16,522,762
	보존용재산	8,062,853	0	0	0	8,062,853
일 반 재 산		10,502,610	△83,168	2,683,409	2,766,577	10,419,442

마.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내역

(단위 : 천원)

종류별	구 분	전년도 말 현재액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㉑ + ㉒)
			계㉒	증 가	감 소	
합 계		4,169,844	△1,373,622	21,592,456	22,966,078	2,796,222
보 증 금		65,462	82,204	102,512	20,308	147,666
보 관 금		383,211	61,752	14,802,910	14,741,158	444,963
기 타		3,721,171	△1,517,578	6,687,034	8,204,612	2,203,593

검사결과 당해년도 말 현재 세입세출외현금 총액은 2,796,222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Ⅲ. 결산검사위원 감사의견

성과보고서에 대한 합리적 개선(홍보담당관 등 해당부서)

<현황 및 문제점>

- 성과보고서 작성 시 각 부서는 부서별 주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를 기준으로 부서의 성과를 측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성과를 정량화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제출된 성과 보고서는 매우 미흡한 상태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
- 성과는 부서가 수행하는 과업에 의한 결과값(효과)을 나타낼 수 있어야하나 많은 부서에서 특히 성과지표의 설정에 문제점을 보임.
 - 가장 큰 문제점은 부서가 설정한 성과지표들이 정책목표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특성상 부서별 정책사업 목표가 삶의 질, 고객의 만족도와 같이 성과지표도 정성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다수임.
- 성과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추거나 결과 값을 높이는 등 일부 발견되고 있음.

<개선 방안>

- 성과지표는 지표를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정책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선정해야 하나 부서의 반복적 업무의 수행 횟수를 성과지표로 삼고 평소처럼 업무를 수행해서 목표 수치에 달성했다고 하여 정책 목표 달성여부의 판단으로 보기 어려움.
- 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성적 대상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정량화된 결과 값을 수집할 수밖에 없지만 이 경우라도 각 부서는 성과지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토론이나 세미나, 교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부서는 단순한 사업계획 및 실행 횟수로만 성과를 측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대상자들의 사업효과 여부 등 객관화된 성과 지표 반영이 필요함.
- 과업에 대한 결과 값은 있는 그대로 작성하여야 피드백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차년도 계획 수립 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성과보고서는 진실 되게 작성되어야 함.

○ 부서별 개선사항

부서명	개 선 사 항
홍보담당관	시정홍보를 위한 성과지표들이 19년과 20년이 완벽하게 동일한 업무로 시정홍보라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타 지표 발굴
정책기획과	이미 수행계획이 수립된 기존업무의 횡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시 목표 달성은 당연한 것으로 정책사업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한 지표 개선
예산법무과	매년 횡수를 채우기 위한 성과지표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및 교육개최 활동을 통해 사업목표인 시민, 공무원 제안 반영 결과 등 긍정적 효과를 성과지표로 변경
자치분권과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전략 목표에 대해 성과지표에 활동 횡수뿐만 아니라 시민의견 반영사례, 시민역량 향상도 등도 반영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주요 정책목표로 성과 지표인 도로명판 확충 계산식은 (지출액/예산액)*100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도로명판 확충이 시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함이면 도로명판 보수 소요기간, 도로명주소의 시민 인식도 등을 성과지표로 정책목표와의 연관성 제고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 관련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로 자동차 민원 횡수와 연관된 서비스 제공 건수가 성과지표로 부적절하고 업무적 통제도 불가능하므로 합리적이고 실현성 높은 성과지표로 개선
도시교통과	버스노선 신설 및 개편이 성과지표일 경우 자칫 무리한 노선 신설 및 개편이 추진될 수 있어, 버스노선 개편 등은 시민 다수의 요구와 세심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사항으로 성과지표로 부적절하기에 재검토
도시개발과	연간 공정률이 매년 10%씩 진행이 불가능하나 보고용 데이터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10년을 총 기간으로 단순 분할한 근거를 보완 제시하거나 현실적 성과지표로 수정
평생학습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에서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성과 지표로 의미가 부족하고 정책목표와 연결되기도 어려워 정책방향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콘텐츠를 영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홈페이지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선행이 필요

지하체력단련장 리모델링 설계변경과 보강공사의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 총예산 40여억원을 투입한 광명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리모델링 공사는 두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쳐 준공된 후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세차례의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음.

구분	번호	적 요	계 약	
			일자	금액(원)
본공사	①	리모델링 공사	3. 6	1,370,114,000
	②	1차 설계변경 - 폴트연습장 기계 관급공사를 사재공사로 변경	3. 31	126,674,850
	③	2차 설계변경 1) 누락공종 반영 - 인테리어 보완공사(벽체 및 바닥 실내조경) 등 2) 공종 변경 - 제2탁구장 하부틀(철재 각관에서 부식에 강한 재질의 아연도 각판 설치로 시설물 내구성 및 안전성 향상 도모) - 복도 바닥타일(비닐타일에서 데코타일로 변경) - 헬스장 바닥재(친환경바닥재에서 렉스코트로 변경) - 헬스장 신발장, 탈의실 락커장, 골프채 및 탁구채 보관함 등 가구에 대하여 기존분 재사용 대신 신설 교체 설치	6. 2	148,116,390
	④	건강보험료 등 정산 준공	6. 22	△69,819,880
		소계		1,575,085,360
	보강공사	⑤	제2탁구장 지하 환기문제로 결로 발생, 강제의 부식 및 누수 진행, 배수로 청소, 방화문 철거 등	8. 24
⑥		매표소 바닥이 낮고 매표대가 높아 민원발생으로 수리, 제2탁구장 벽면 및 기둥 쿠션 설치 등	9. 17	20,580,000
⑦		로비 바닥 침출수 발생(데코타일 철거 비닐타일 시공) 방수공사 및 배수로 재공사 등	10. 6	21,700,000
		소계		61,550,000
총계				1,636,635,360

- 본공사 ②번 1차 설계변경(실내골프연습장)의 문제점
 - 최초 설계시 실내골프연습시스템(물품 구매 설치)으로 설계하여 관급자재비로 설계서에 반영하였으며, ①번의 리모델링 공사비 1,370,114,000원에 포함되었음.
 - 추후 물품대보다 설치비가 비중이 더 많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가 아닌 공사로 발주하고자 다시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심사를 받은 후 회계과에 계약의뢰 하였음.

- 그러나,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는 분할계약의 금지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저촉되므로 분할계약이 불가하다는 회계과의 의견을 받았음

- 이에 당초 관급공사로 설계 및 입찰 계약된 내용을 사급공사로 설계변경하여 ①번의 건축 시공사에 시공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형식상 사급공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뿐, 기계는 당초 계약대로 ①번에 포함된 업체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사비 126,674,850원만 시공사에 증액시켜준 결과를 초래한바 당초 설계와 설계변경 과정이 정상적인 행태라 할 수는 없는 것임.

- 시공사와 기계납품 업체는 공동수급체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인 광명시민체육관 지하체력단련장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를 1,370,114,000원에 수급 계약한 것이며, 이에는 실내골프연습장 관급공사도 포함된 것임.

- 보강공사의 문제점
 - 건설공사에 있어 준공 후 일어나는 시설 문제에 있어 일반적으로 그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지하수 발생 문제는 설계서 및 시공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공사 ①번의 리모델링 공사와 ③번의 2차 설계변경의 누락공종 반영과 공종 변경 내용을 종합하면 ⑤ ⑥ ⑦번의 보강공사 내용과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이는 별도의 보강공사를 할 사항이 아니고 시행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됨.

〈개선 방안〉

- 1차 설계변경은 명칭만 관급공사에서 사급공사로 표기한 것일 뿐 시공사에 공사비 126,674,850원만 증액시켜준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당초 설계서와 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할계약 금지 규정과의 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위 3건의 보강공사 중 당초 리모델링 공사 및 2차 설계변경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

- 지하체력단련장은 준공 후 지하수 및 침출수가 분출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지하수는 그 수맥의 흐름 방향에 따라 계속해서 매년 하절기마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향후 체육관의 관리에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따라서, 지하수 및 침출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하자보수 요구 여부 또는 전반적인 방수공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광명예총 30년사 발간 보조금 정산업무 철저

<현황 및 문제점>

○ 광명예총 30년사 발간 보조금 20,000,000원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 하였음

1) 사업자등록번호 : 105-17-xxxxxx(서대문세무서)

2) 상호 및 성명 : 하얀xx 조xx

3) 업종 : 제조/일반서적 출판

○ 사업 완료 후 대금은 다음 사업자에 지불하였음

1) 사업자등록번호 : 105-14-xxxxxx(마포세무서)

2) 상호 및 성명 : 베이비 X 조xx

3) 업종 : 소매, 제조, 도매/전자상거래, 인쇄, 판촉물, 무역

4) 결제내역

일 자	금 액	업체명	결제방법
9.24	4,000,000	베이비 X	체크카드
12.11	16,000,000	베이비 X	체크카드
계	20,000,000		

○ 당초 출판이라는 계약 자격을 가진 업체인 하얀 XX와 계약하였으므로 동 업체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출판이 아닌 인쇄 업체인 베이비 X라는 다른 업체에 대금을 지불한 바 이는 보조금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결과로 보임

<개선 방안>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 지출 증빙을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추후 해당 단체의 보조금 신청 적격여부 검토 시 반영하기 바람.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보조금 정산 미비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농업 육성 발전과 농업 경영지원 목적을 위해 경기 xxxxx 공동사업 법인과 코나xx(주)라는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였음
- 위 2개 업체 중 경기 xxxxx 공동사업 법인은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코나xx(주)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코나xx(주) 보조금 지급 내역

지출원인 행위		지 출		비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12.22	56,416,500	12.23	56,416,500	1차
12.23	1,741,500	12.23	1,741,500	현장신청
12.29	66,420,000	12.29	66,420,000	선지급
12.29	13,527,000	12.29	13,527,000	온라인2차
계	138,105,000		138,105,000	

〈개선 방안〉

- 세입 세출 결산 시까지 정산 누락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조속히 정산을 실시하여 세입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출연금 및 보조금 단체의 손해배상금 사후관리 철저

<현황 및 문제점>

1. 광명시 청소년재단의 계약해지 손해배상금의 출연금 처리

- 동 재단은 2018년 4월 26일 xxxxxx(주)와 진로 진학 설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약을 4억원에 체결한 후 6일만인 2018년 5월 2일 실시된 광명시 특정감사에 의거 2018년 6월 28일 담당자 징계와 함께 용역 해지 및 사업비 반납이 결정되었음.
- 2018년 12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 10347 용역비 지급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심리 및 조정 절차를 거쳐 2020년 8월 26일 손해배상금 1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 조정판결이 있었음.
- 재판 진행 중인 2020년 5월 15일부터 6차례에 걸쳐 동 업체와 시스템을 다시 구매하는 조건 등을 협상한 바 있으며, 당시 xxxxxx(주)에 계약선급금 등이 지출되지도 않았고 착수 보고회 등 용역 진행이 전혀 없어 실질적 손해 배상의 실체가 없었음에도 1억 1천만원이나 되는 손해배상 1차 조정판결이 있었음.
- 재단은 더 이상의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확정된 배상금을 재단의 운영성과표에 손실로 처리하고 시의 출연금으로 지출하였는바, 계약 내용과 해지 처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2. 광명시 체육회 평화마라톤 대회 계약해지 손해액의 보조금 처리

- 체육회는 2020년 3월 9일 <2020 KTX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3월 10일 보조금 1억 8천만원을 받은 후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대회를 연기하다 최종적으로 대회를 취소하였음.
- 9월 18일에 117,782,660원을 반납하여 결과적으로 계약 선급금 등으로 지출한 보조금 62,217,34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코로나 19 상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상황으로 대회 진행 여부에 따른 계약금 지급 시 종합적 고려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방안>

-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손해 배상에 대하여 그 과정을 파악하여 사후관리 및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외부업체와의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내용과 손해 배상 조항 등에 대하여 법률적 분쟁에 대비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기 바람.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

<현황 및 문제점>

-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는 금하로에서 광명도덕산캠핑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확장을 위한 공사로 2018년 902,857,000원 예산편성 후 실시설계용역비와 분할측량수수료 등에 101,250,000원을 지출하고 801,60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음.
- 2019년에는 명시이월된 801,607,000원 중 실시설계용역 잔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117,729,300원을 지출하고 잔액 683,877,000원은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 하였음.
- 2019년 본예산에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와 하안동 463번지 일원 도로개선공사로 각각 928,571,000원과 50,000,000원을 편성하여 6회 추경에 50,000,000원은 명시이월하고 928,571,000원은 총사업비 49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 계속비이월 하였음.
- 2020년에는 명시이월된 50,000,000원과 사고이월한 683,877,000원을 보상금 지급으로 우선 지출하고 이월된 계속비 예산으로 693,978,140원을 보상금 지급하여 234,592,860원은 2020년 계속비이월 하였음.
- 2021년 본예산에는 총 사업구간을 659m에서 360m를 2022년까지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299m는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9억원에서 2,255,671천원으로 변경하고 587,100천원을 편성하였음.

<개선 방안>

- 지방재정법 제42조는 자치단체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50조 제4항은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공사는 광명도덕산캠핑장으로 가는 도로를 정비 확장하는 공사로 2018년 최초의 예산편성 시부터 소요되는 총금액을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승인을 받아 사업을 원활히 완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으며, 2019년 총공사비 49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음에도 2021년 예산편성 시 전체 공사완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여 22.5억원의 일부만 공사완료하고 중단된 채 나머지는 이후 새로운 예산편성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을 의회 승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계속비사업의 취지에 위배됨으로 최종 사업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의 연장 등의 조정을 하더라도 최종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이행강제금 현년도분 수납비율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수납현황

(단위: 천원)

과별	부과액	수납액(비율%)	환급액	미수납액
주택과	1,589,694	465,874(29.3%)		1,123,820
도시계획과	989,414	300,980(30.4%)	934	687,500
합계	2,579,108	766,854(29.73%)	934	1,811,320

○ 전체 현년도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1,813,188	8,814	1,123,820	680,554

○ 도시계획과와 주택과 소관 이행강제금의 당해년도 수납비율이 부과 결정금액의 30%정도에 그치고 있는 바,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고, 상반기보다 연도말에 집중 부과되는 등의 사유로 연도말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현년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행방불명 비율이 61.9%에 이르고 있음.

<개선 방안>

○ 부과를 연도말보다 상반기에 집중하도록 업무개선을 하고 징수를 강화하여 현년도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기 바람.

○ 도시계획과와 주택과에서 부과한 현년도분 이행강제금은 즉시 분석후 독촉, 압류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수납율이 70% 이상 달성되도록 개선하기 바람.

○ 토지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의 경우 무재산등으로 결손처분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부과당시 현금 및 동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집행 할 필요가 있음.

공공미술 프로젝트 집행의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 (재)광명문화재단은 <2020년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광명시민 그린(GREEN)을 스케치하다>라는 사업명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 413,400,000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음.
- <문화, 평화와 그린(GREEN)을 만나다>라는 작품 설치팀과 <광명시민, 그린(GREEN)을 그리다>라는 시민참여 프로젝트팀 두 팀을 구성한 후, 두 팀의 대표로 00아트 김 00을 선정하여 김 00의 개인 사업자 등록증(면세 사업자 430 -92 -XXXXX)을 근거로 김 00의 개인 계좌로 보조금 전액을 이체하였음.
- 그 결과 김 00이 재료를 구입하고 작가비를 지급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바 이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지위를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됨.
- 광명동굴 입구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높은 나무 구조로 평화의 탑 조형물을 설치하여 광명동굴 관람객에게 2년 이상 전시할 계획으로 조형물 설치예산이 기투입된 바, 재료비 세금 계산서는 00아트 김 00 (사업자등록번호 430-92-XXXXX)로 받았으며, 인건비도 00아트 김 00이 지급처리하였음.

구분	품목	일자	금액	지급처
재료비	메인조형물	2021.01.04	54,994,500	140-XX-XXXXX
	기초공사 및 데크공사	2021.02.09	11,527,500	238-XX-XXXXX
	금속조형물	2021.01.06	22,000,000	297-XX-XXXXX
	패턴조형물	2020.12.24	21,978,000	512-XX-XXXXX
		소계	110,500,000	
인건비	작가인건비	2020.12.17	46,520,000	000 외 15명
		2021.02.22	46,520,000	상기 동일
		소계	93,040,000	
계			203,540,000	

<개선방안>

공공미술 프로젝트 보조 사업 전반에 대한 정산을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재정법 및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조치하기 바람